 <b>행정안전부</b>	<b>보 도 자 료</b>	작성과	생활공간정책과
	<b>2018년 3월 28일(수) 조간</b> <b>(3. 27. 12:00 이후)부터</b>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김상진 사무관 김태범
		연락처	02-2100-4260 02-2100-4262

##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 -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

-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해외사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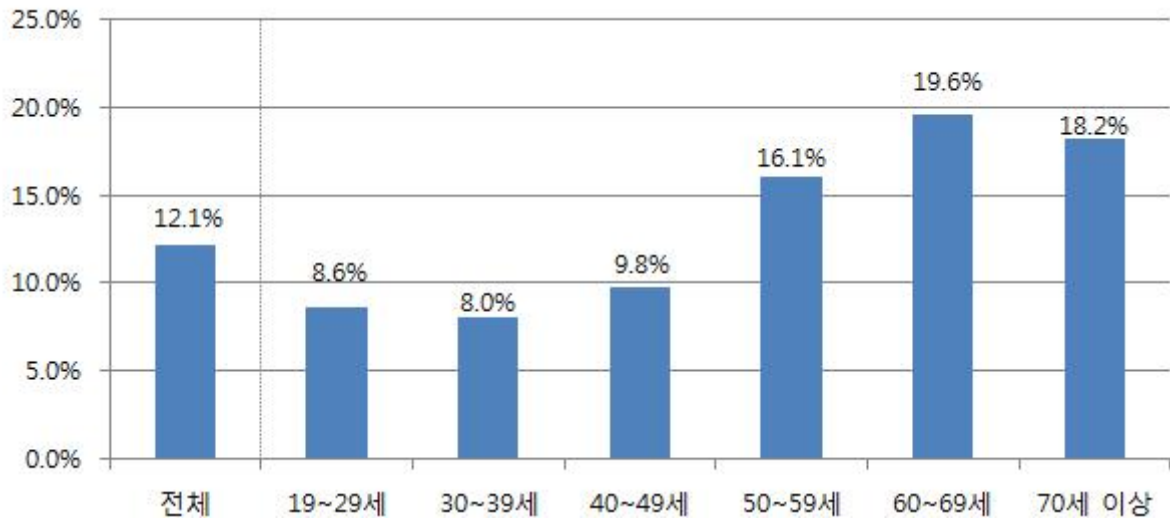
구 분	처벌 내용
독 일	1,500유로(약 190만원) 이하 질서위반금
영 국	2,500파운드(약 372만원) 이하 벌금
일 본	5년 이하 징역, 10만엔(약 103만원) 이하 벌금
미국(캘리포니아주)	250달러(약 30만원) 벌금
호 주	300달러(약 26만원) 이하 벌금

-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 (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 '16.4월~5월)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자전거 운전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시 어린이에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12년~'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붙임2 참고)
  -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붙임3 참고)
  -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였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으며,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오늘부터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 현행 「도로교통법」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 3월 22일부터 페달보조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전기자전거의 원동기가 작동되는 경우에는 노인,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보도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에 대한 조사연구

※ 출처 : '17.9월, 대한의학회지(JKMS), 부천성모병원 황세환, 이중호 교수 연구팀



<그림>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률

## 붙임2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발생부위

※ 출처 : '17.5월, 보건복지부, 5년간(2012년~2016년) 응급의료 데이터 분석

<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의 연령별 손상발생부위 (단위 : 명, %)

연령	손상발생부위*									
	머리	목	가슴	복부 아래	어깨, 위팔	팔꿈치, 아래팔	손목,손	둔부, 대퇴	무릎· 아래다리	발목·발
전체	17,245	1,381	2,438	2,738	4,014	4,082	3,492	1,848	5,721	1,928
	38.4%	3.1%	5.4%	6.1%	8.9%	9.1%	7.8%	4.1%	12.7%	4.3%
9세이하	2,334	42	100	228	283	499	255	108	519	299
	50.0%	0.9%	2.2%	4.9%	6.1%	10.7%	5.5%	2.3%	11.1%	6.4%
10-19세	4,144	223	254	554	873	1,403	1,122	419	1,816	678
	36.1%	1.9%	2.2%	4.8%	7.6%	12.2%	9.8%	3.6%	15.8%	5.9%
20-59세	7,521	776	1,220	1,207	2,241	1,747	1,725	742	2,462	768
	36.9%	3.8%	6.0%	5.9%	11.0%	8.6%	8.4%	3.6%	12.1%	3.8%
60세 이상	3,245	340	863	749	616	433	391	578	924	183
	39.0%	4.1%	10.4%	9.0%	7.4%	5.2%	4.7%	6.9%	11.1%	2.2%

\* 내원 환자 손상코드를 분석한 결과로, 한 명의 환자에게 복수의 손상발생부위 발생 가능

### 붙임3

## 안전모 착용여부에 따른 충돌시험

※ 출처 : '17.9월,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이동수단 종류별 도로 이용자간 충돌상해 연구

### □ 시험 방법

- 머리가 강체 또는 지면에 부딪히는 충돌속도와 동등한 에너지인 낙하 높이에서 '보행자 머리모형'으로 낙하시험 실시
- 시험조건

구분	성인 머리모형(4.5kg)		어린이 머리모형(3.5kg)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 착용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 착용
낙하높이	393mm(10km/h) / 885mm(15km/h) / 1,573mm(20km/h)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 착용

### □ 시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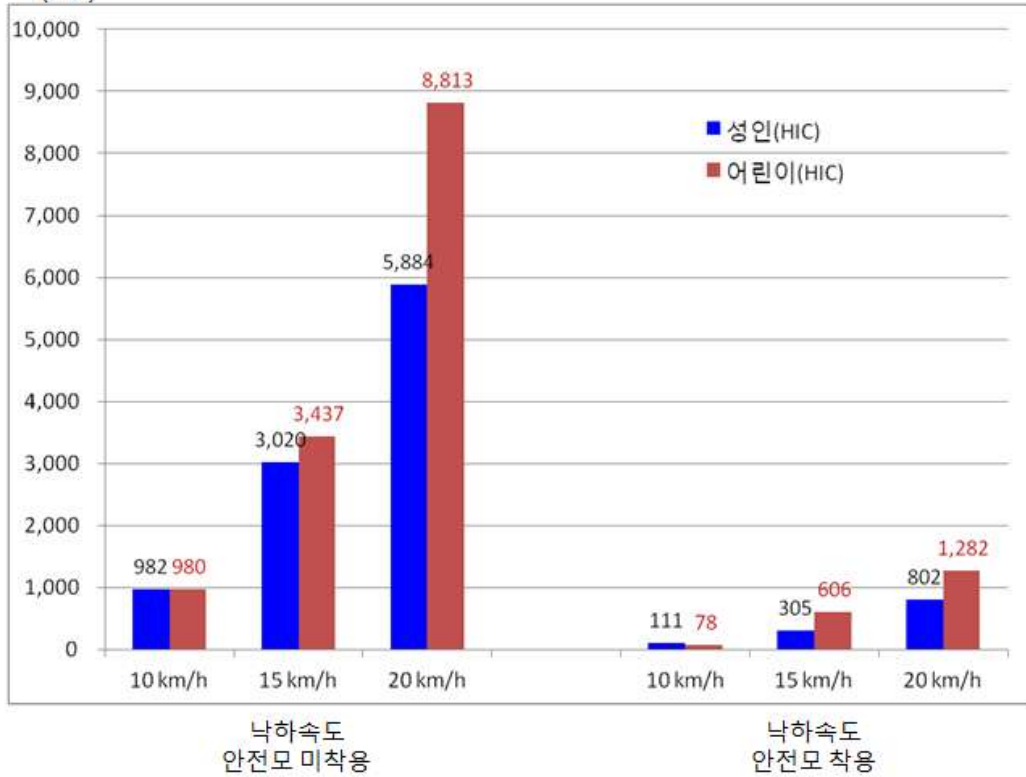
구분	성인 머리모형(4.5kg)				어린이 머리모형(3.5kg)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 착용		안전모 미착용		안전모 착용	
높이(mm)/ 속도(km/h)	HIC15	중상가능성 (AIS3+)	HIC15	중상가능성 (AIS3+)	HIC15	중상가능성 (AIS3+)	HIC15	중상가능성 (AIS3+)
393 / 10	982	22.4%	111	0.0%	980	22.3%	78	0.0%
885 / 15	3,020	77.6%	305	1.0%	3,437	82.5%	606	7.9%
1,573 / 20	5,884	95.1%	802	15.0%	8,813	98.6%	1,282	34.5%

\* 머리상해치(HIC15) 1,000: 의식불명 6시간, 사망률 0.8~2.1%

- (머리상해치) 안전모 미착용 대비, 안전모를 착용 경우 성인 및 어린이 머리모형 각각 약 1/5.7 ~ 1/12.5 수준으로 감소
- (중상가능성) 안전모 미착용 대비, 안전모를 착용 경우 성인 및 어린이 모두 중상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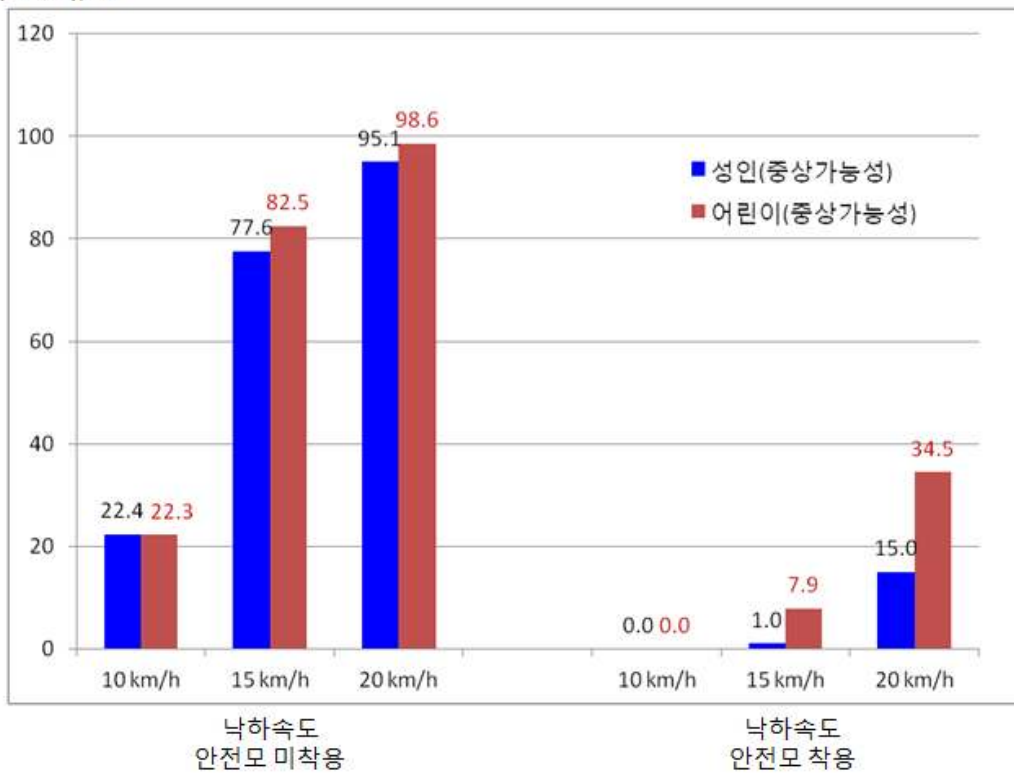
☞ 안전모 착용 시 안전성 크게 증가

머리상해치  
(HIC)



<그림1> 안전모 미착용 및 착용 조건에서 머리상해치 비교

중상가능성  
(AIS3+), %



<그림2> 안전모 미착용 및 착용 조건에서 중상가능성 비교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및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